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우대 및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모범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규정하고자 함.
- 「주차장법」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8항 및 제5조제8항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반영하고자 함.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조항 개정(안 제4조)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주차장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규모 규정

○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 중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명칭 변경(안 제13조)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명칭 변경

○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안 제14조)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 과징금 처분 규정 개정(안 제25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별지 제3호서식 내용 변경

- (안 제13조)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명칭 변경사항 반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2. 8. 25. ~ 8. 30.(5일간)

6.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고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1) 전자우편(e-mail) : jby1101@korea.kr

2)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3) 팩스: 061-350-5122

4) 전화: 061-350-56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상주차장 :**”을 “**노상주차장:**”으로, “**(교차점광장에 의한다)**”를 “**(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외주차장 :**”을 “**노외주차장:**”으로, “**교통광장외**”를 “**교통광장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 제19조**”를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영주차장 : 군수**”를 “**공영주차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노외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지 아니하고**”를 “**따르지 않고**”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지 아니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를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지 하거나 기타**”를 “**폐지하**”

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를 “않도록 관계공무원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기재하여”를 “기재하여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발생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을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을 “표준규격은”으로, “제3조의 규정을”을 “제3조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

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는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제2호 중 “건축법 제3조제2항”을 “「건축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광군 건축 조례 제16조제3항”을 “「영광군 건축 조례」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관리비”를 “감리비”로, “당해 공영주차장”을 “해당 공영주차장”으로,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않는 경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다”

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0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대수는”을 “주차대수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단 중 “범위 내에서 당해”를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개방주차장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7조 별표 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지 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노상주차장</u> : 도로의 노면 또는 <u>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의한다)</u>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2. <u>노외주차장</u> : 도로의 노면 및 <u>교통광장외</u>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3. <u>부설주차장</u>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 연습장, <u>기타</u>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u>당해</u>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4. <u>공영주차장</u> : <u>군수</u>가 설치한 <u>노상주차장</u> 및 <u>노외 주차장</u></p> <p>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p>	<p>제2조 (정의) ----- ----- 뜻은 -----.</p> <p>1. <u>노상주차장</u>: ----- -----(<u>교차점광장만 해당하는 다. 이하 같다</u>)----- -----</p> <p>2. <u>노외주차장</u>: ----- <u>교통광장 외</u>----- -----</p> <p>3. <u>부설주차장</u>: 「주차장법」 제19조----- -- <u>그 밖에</u> ----- ----- - <u>해당</u> ----- -----</p> <p>4. <u>공영주차장</u>: <u>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u>----- ----- <u>노외주차장</u></p> <p>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 ----- ----- ----- -----</p>

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 2. (생략)

<신설>

3. ~ 11. (생략)

제5조(가산금)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에 의한 방법

2. · 3.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5조(가산금) -----
----- 따르지
않고 -----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
-----.

1. ----- 따르지
않은 ----

2.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
-----.

1. -----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권(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 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가.나. (생략)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폐지
하거나 그 밖에 -----

가.나. (현행과 같음)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
제13조제2항-----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1.·2.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

----- 않도록 관계공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수
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
다.

제8조 (위탁계약) 조례 제7조제1
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
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1. 2. (생략)

제9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
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
지에 기재하여 할 사항은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
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제10조 (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무원이 -----
-----.

제8조 (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

-----.

1. 2. (현행과 같음)

제9조 (주차장의 표지) ① -----

----- 시행규칙 제8조에 따
른 -----

----- 따라 -----
-----.

② -----
----- 따르
고 ----- 기재
하여야 ----- 제1항-----
-----.

③ ----- 해당 --

----- 따른 -----
-----.

제10조 (이용시간) -----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법 제10조에 따라 -----

----- 7일 전- 해당 -----

-----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 해당 -----

② ----- 표준규격은 - 제3조를 -----.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

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4. 도시재개발사업
- 5. 도시철도건설사업
-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는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있다.

제13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

제13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 면제) ① -----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② -----
-----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본문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

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계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생략)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관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4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② (생략)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현행과 같음)

4.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 감리비-----
해당 공영주차장-----

----- 제86조에 따라 ---

-----.

② ----- 단서에 따라 --

-- 않는 경우 -----

범위-----.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생략)

3.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신설>

④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1. -----
----- 쉬운 -----
-----.

2. (현행과 같음)

3. -----
--- 따른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
제10호에 따라 -----

-----.

주차대수가 -----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관리비) -----

----- 범위에서 해당 -----

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개방주차장주차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

① (생략)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 5. (생략)

제25조 (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 제17조제2

-----.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 개방주차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 (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별표 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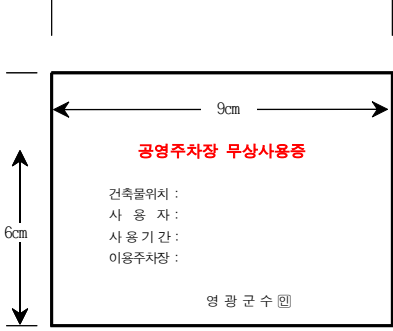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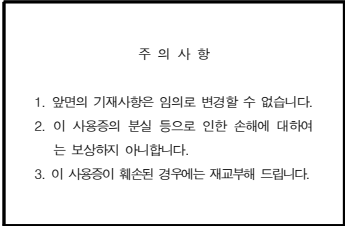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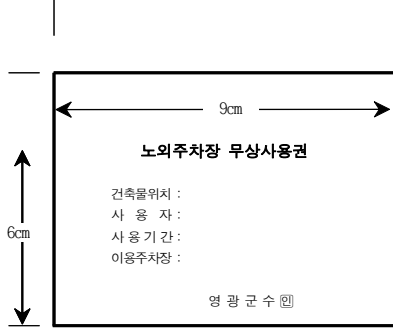
④ -----
----- 않은 -----

-----.

⑤ 제1항에 따라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지 제3호서식)</p> <p>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3조제1항 관련)</p> <p>(앞면)</p>  <p>비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p> <p>(뒷면)</p> 	<p>(별지 제3호서식)</p> <p>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제13조제1항 관련)</p> <p>(앞면)</p>  <p>비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p> <p>(뒷면)</p> 